

#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10. 18) 상정
- 제13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10. 18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권희춘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19816호, 2006. 12. 3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#### <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>

-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규정을 삭제함.  
(안 제29조)
-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경우 “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「건축법」의 규정에 따라 준공 인가를 마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500제곱미터 이하)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”의 규정을 삭제함.  
(안 제40조제1항제1호)

-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함.(안 제40조제4호)
  - 매각 시 잔여지가 「건축법」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매각이 가능하도록 함.
-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 「산림법」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.(안 제44조)
-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상향 조정함.(안 제64조)
  - 총보상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,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3배(재산가액의 5~10%)로 증액함.

〈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〉

-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8%에서 6%로 인하함.  
(안 제4조제1항제2호나목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관련 상위법의 개정 및 공포, 시행일자는?	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816호로 2006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되고 공포·시행이 됨.
○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소규모 토지의 면적 기준은?	○ 5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.

#### 4. 토론요지

##### 가. 찬성토론

없음

##### 나. 반대토론

없음

#### 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#### 6. 소수의견

없음

#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#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51호
의결 년월일	2007. 10. 26 (제139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10. 9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19816호, 2006. 12. 3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### 〈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〉

- 가.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규정을 삭제함.(안 제29조)
- 나.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“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「건축법」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500제곱미터 이하)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”의 규정을 삭제함.(안 제40조제1항제1호)
- 다.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함.(안 제40조제4호)
  - 매각 시 잔여지가 「건축법」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매각이 가능하도록 함.

라.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 「산림법」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.(안 제44조)

마.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상향 조정함.(안 제64조)

- 총보상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,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3배(재산가액의 5~10%)로 증액함.

#### <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>

-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8%에서 6%로 인하함.(안 제4조제1항제2호나목)

##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2항”으로 하고, 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지정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14조 규정”을 “제14조”로 하고, “위임시”를 “위임 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매각하고자 할”을 “매각할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”를 “제16조에 따른 부천시공유재산심의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제3조의 규정”을 “제3조”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제7조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7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49조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4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제52조의 규정”을 “제52조”로 하고, “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”을 “양식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44조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44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유재산실태조사시”를 “공유재산실태조사 시”로 하고, “대부시”를 “대부 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토지안”을 “토지 안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제7조의 규정”을 “제7조”로 하고, “예산편성전”을 “예산편성 전”으로 하며, 단서 부분 중 “연도중”을 “연도 중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제12조의 규정”을 “제12조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제17조의 규정”을 “제17조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제27조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27조제1항”으로 하고, “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1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“제14조의 규정”을 “제14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7조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27조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23조 중 “일시사용허가,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”를 “일시사용허가 및 전세금의 평가 그 밖에”로 하고, “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”을 “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제35조의 규정”을 “제35조”로 한다.

제27조 본문 중 “제26조의 규정”을 “제26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38조의4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38조의4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산업단지,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”를 “제7조부터 제8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2조의 규정”을 “제2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18조의 규정”을 “제1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산업단지안”을 “산업단지 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제1호 내지 제5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제31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1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주거용건물”을 “주거용 건물”로 하며, “건축법의 규

정”을 “「건축법」”으로 하고, “이항”을 “이 항”으로 하며, 단서 부분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“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”을 “제29조제1항제7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19조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9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제3조제1호 내지 제3호”를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”으로 하며, “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9조를 삭제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제28조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28조제1항”으로 하고, “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”를 “원석시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원석시가란 함은”을 ““원석시가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한다.

제32조 중 “제35조의 규정”을 “제3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“제9조의 규정”을 “제9조”로 하며,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“가목 내지 마목”을 각각 “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

호마목 중 “가목 내지 라목”을 “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바목 중 “가목 내지 라목”을 “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”으로 하고,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”를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“가목 내지 라목”을 “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“가목 내지 라목”을 “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”으로 하며,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”를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

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호 사목 중 “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”을 “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1조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4조 본문 중 “제34조의 규정”을 “제34조”로 한다.

제35조제2항 본문 중 “제32조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32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 본문 중 “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9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2조의 규정”을 “제2조”로 하며, “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”을 “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”으로 하고,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규정”을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제2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39조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39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9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3호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계약시”를 각각 “계약 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”을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”으로 하며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”을 “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”을 “제39조제2항제5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”을 “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”로 한다.

제39조 본문 중 “제27조제8항의 규정”을 “제4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7조·제8조”를 “제7조부터 제8조의3까지”로 하며, “지방산업단지, 농공단지”를 “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”로 하고, “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8조의4제2항에 따라”로 하며, “국가산업단지내”를 “국가산업단지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”을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“아파트형공장내”를 “아파트형공장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투자지역내”를 “투자지역 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용지내”를 “용지 내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 본문 중 “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”을 “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토지(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)”를 “토지(다만, 단독주택의 경우 200평방미터를 한도로 한다)”로 하고, “분할매각할 수 있다”를 “분할매각할 수 있으며, 매각 시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1조 중 “제48조의 규정”을 “제48조”로 한다.

제44조를 삭제한다.

제4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본문 중 “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”를 “표준설계면적기준에

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며, “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”을 “신축 시 직무 관련 1명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신축시”를 “신축 시”로 하며,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 제48조 중 “「부천시 건축 조례」의 규정”을 “「부천시 건축 조례」”로 한다.

제50조 중 ““관사”라 함은”을 ““관사”란”으로 한다.

제52조 중 “신청에 의하여”를 “신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3조 본문 중 “다음사항”을 “다음 사항”으로 한다.

제55조제3호 중 “제53조의 규정”을 “제53조”로 한다.

제57조 본문 중 “제51조의 규정”을 “제51조”로 한다.

제58조 중 “제52조의 규정”을 “제52조”로 하고, “제56조의 규정”을 “제56조”로 한다.

제59조제1항 중 “제55조의 규정”을 “제5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2조제1항 중 “제81조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8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81조제1항의 규정”을 각각 “제8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4조제1항 본문 중 “보상률”을 “보상율”로 하고, “1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“200만원”을 “6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00만원”을 “3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아니 한다”를 “아니한다”로 한다.

제68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조례의 개정)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“공영개발사업재산”이라 함은”을 ““공영개발사업재산”이란”으로 하고, “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관련 법령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관리등”을 “관리 등”으로 하고, “관계법령”을 “관계 법령”으로 하며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“납부등”을 “납부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제42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2조에 따라”로 하며, 단서 부분 중 “당해지구”를 “해당 지구”로 하고, “수요성등”을 “수요성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“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%이상”을 “계약체결 시 매매대금의 10퍼센트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계약체결일로부터 3월이내 매매대금의 40%이상”을 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매매대금의 40퍼센트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계약체결일로부터 6월이내”를 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매매대금의 10%이상”을 “매매대금의 10퍼센트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8%”를 “6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9조제4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정부투자기관 중”을 “정부투자기관 중”으로 하며, 같

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”를 “제1항제2호에 따른다”로 한다.

[금액별 분할납부기간]

매 각 대 금	분할납부기간
1억 미만	1년 이내
1억 이상~3억 미만	2년 이내
3억 이상~5억 미만	3년 이내
5억 이상~10억 미만	3년 6월
10억 이상~20억 미만	4년 이내
20억 이상~30억 미만	5년 이내
30억 이상~40억 미만	6년 이내
40억 이상~60억 미만	7년 이내
60억 이상~80억 미만	8년 이내
80억 이상~100억 미만	9년 이내
100억 이상	10년 이내

제5조제1항 중 “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”를 “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“15일이전”을 “15일 이전”으로 하고, “다음 각호에 의하여”를 “다음 각 호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4조제1항제2호 나목”을 “제4조제1항제2호나목”으로 하고, “적용 한다”를 “적용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기타토지”를 “그 밖에 토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변경등”을 “변경 등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제38조제1항제23호에 위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”을 “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”으로 하고, “정부투자기관중”을 “정부투자기관 중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재산중”을 “재산 중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해제등”을 “해제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

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5년이내”를 “5년 이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“3월이상”을 각각 “3개월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등”을 “제1항에 따라 해제 등”으로 하며, “30일전 까지 해제등”을 “30일 전까지 해제 등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「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”를 “「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관리책임) ①~② (생략)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조(관리책임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-----지정에 필요한-----.
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시장은 도지사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시 이를 수입 처리한다.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-----제14조-----위임시-----. ② 제1항에 따라-----매각할-----.
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할 사항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.	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-- 제16조에 따른 부천시공유재산 심의회-----.
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의 규정에 따른 “공정이 100분의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”의 확정사항	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제3조-----그밖의-----

현행	개정안
<p>3.~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</p> <p>2.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</p> <p>3.~4. (생략)</p> <p>제7조(재산의 증감 및 현황)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8조(실태조사)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1.~7. (생략)</p> <p>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, 재산매각</p>	<p>3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del>제7조제2항</del></p> <p>2. <del>제49조제1항</del>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재산의 증감 및 현황) <del>제52조</del> 양식.</p> <p>제8조(실태조사) ① <del>제44조제2항</del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</p> <p>1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del>공유재산실태조사시</del></p>

현행	개정안
<p>및 <u>대부시</u>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타인의 <u>토지안</u>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</p> <p>5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<u>예산편성전</u>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연도중</u>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3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 재산관리관은 <u>제1항</u>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---<u>대부시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u>토지안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-----</p> <p>-----<u>제7조</u>-----</p> <p>-----<u>예산편성 전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연도 중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제1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4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서)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4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서) 제12조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7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며,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무상사용기간) ----- -----제17조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2조(행정·보존재산의 위탁관리)</p> <p>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·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,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·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·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·보존</p>	<p>제22조(행정·보존재산의 위탁관리)</p> <p>① -----제27조제1항----- ----- -----제21조에 따라----- -----.</p> <p>② -----제1항----- ----- -----제14조----- -----.</p> <p>③ 제1항-----</p>



현행	개정안
<p>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,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27조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(이하 “외국인 투자기업등”이라 한다)에 대부·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</p> <p>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산업단지,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</p> <p>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</p>	<p>----- ----- -----제35조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제26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제38조의4제2항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제7조부터 제8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-----</p> <p>3. -----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3. <u>주거용건물(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은 연 1,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영 <u>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</u></p> <p>3. 「<u>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」 <u>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,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「<u>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</u>」 <u>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</u></p>	<p>3. <u>주거용 건물(「건축법」</u> ----- ----- -----<u>이 항</u>----- ----- -----<u>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<u>제29조제1항제7호</u>----- ----- -----</p> <p>3. ----- -----<u>제19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제3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</p> <p>제29조(토지의 지하·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)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.</p> <p>제30조(토석채취료 등) 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 합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. 다만,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, 용도별 생산</p>	<p>-----제29조 제1항제14호에 따라----- -----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제30조(토석채취료 등) ① 제28조 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원석시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“원석시가”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·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에도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채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(이하 이 조에서 "대부료등"이라 한다)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가.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</p> <p>나.~마. (생략)</p> <p>바. <u>가목 내지 마목</u>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</p> <p>사. <u>가목 내지 마목</u>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「산업집적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<u>제3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-----<u>제9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나.~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<u>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사. <u>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</u>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</p> <p>2. (생략)</p> <p>가.~라. (생략)</p> <p>마. <u>가목 내지 라목</u>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</p> <p>바. <u>가목 내지 라목</u>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「<u>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</p> <p>3. (생략)</p> <p>가.~라. (생략)</p> <p>마. <u>가목 내지 라목</u>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</p> <p>바. <u>가목 내지 라목</u>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「<u>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</p> <p>사. <u>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</u>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~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<u>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바. <u>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</u>----- 「<u>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라-----</p> <p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~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<u>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바. <u>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</u>----- 「<u>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라-----</p> <p>-----</p> <p>사. <u>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3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) ①영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,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제33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) ① --제31조제4항에 따라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4조(대부료등에 관한 특례)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	<p>제34조(대부료등에 관한 특례) ---</p> <p>-----제34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5조(대부료등의 납기) ① (생략)</p> <p>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</p>	<p>제35조(대부료등의 납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제32조제2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제2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





현행	개정안
<p>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(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)와 투자개발비(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)로 한다.</p> <p>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·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, 농공단지<del>와 같은</del> 법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</p> <p>2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</p> <p>3.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계획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·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</p> <p>4.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</p> <p>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「건축법」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(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을 포함한다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제7조부터 제8조의3까지 -----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-----제38조의4 제2항에 따라----- -----국가산업 단지 내-----</p> <p>2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----- --아파트형공장 내-----</p> <p>3. ----- -----투자기역 내-----</p> <p>4. ----- -----용지 내-----</p> <p>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----- ----- -----.</p> <p>&lt;삭 제&gt;</p>





현행	개정안
<p>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.</p> <p>③청사 등 공용·공공용건물의 <u>신축시</u>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<u>제1항</u> 규정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제48조(시 건축위원회의 심의)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부천시 건축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제50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<u>관사</u>"라 함은 시장·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.</p> <p>제52조(사용허가)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<u>신청에</u>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. 다만, 1급·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53조(사용책임)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(이하 "<u>사용자</u>"라 한다)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<u>다음사항</u>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신축시</u>----- <u>제1항</u>----- -----.</p> <p>제48조(시 건축위원회의 심의) --- ----- <u>「부천시 건축 조례」</u>----- -----.</p> <p>제50조(정의) ----- "<u>관사</u>" <u>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2조(사용허가) ----- ----- <u>신청에</u> 따라 ----- -----.</p> <p>제53조(사용책임) ----- ----- ----- <u>다</u> <u>음 사항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1.~4. (생략)</p> <p>제55조(사용허가의 취소)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사용자가 <u>제53조의</u>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57조(사용료의 면제) <u>제51조의</u> 규정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제58조(비품의 관리) <u>법 제52조의</u>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, <u>제56조의</u> 규정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59조(인계 인수 등) ① <u>제55조의</u>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.</p>	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5조(사용허가의 취소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u>제53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7조(사용료의 면제) <u>제51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8조(비품의 관리) --<u>제52조</u>--- ----- ----- <u>제56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9조(인계 인수 등) ① <u>제55조</u>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

현행	개정안
<p>금지급) ①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<u>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</u> 하되, 총 보상금은 <u>1천만원</u>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필지별로 <u>200만원</u>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가·나. (생략)</p> <p>2.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<u>100만원</u>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<u>아니 한다</u>. 다만,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6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금지급) ① ----- ----- <u>보상율</u>----- -----<u>3천만원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u>600</u> <u>만원</u>----- -----</p> <p>가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<u>300만원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u>아니한다</u>.-----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8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에</u> <u>필요한</u>----- -----.</p>